

학생 상해보험 신청서

1. 보험청구인

단과대학		학과	
학번		학년	
이름			
핸드폰		집 전화번호	

2. 사고 내용

사고 일시		사고 장소	
사고 경위			
손해 내용			

3. 제출 서류

- 1) 사고경위서, 보험금청구서
- 2)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초진차트(20만원 이상)
- 3) 통장사본 (만19세 이하의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첨부)
- 4) 재학증명서 (외국인재학생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첨부)
- 5) 개인정보 동의서

4. 추가 서류

- 병원의 기준병실이 없어서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첨부(최대 7일 인정)
- 교외활동의 경우 지도교수(교직원)의 서명이 있는 관련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일: 년 월 일

※ 위 사고 사실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보험 청구인 성명:		(서명)
수업 담당 교수 또는 지도교수 확인란	소속 학과명 :	성명: (서명)

연세대학교 학생복지처 귀중

사고 경위서

1. 보험계약사항

보험종목		증권번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2. 사고 개요

사고일시		사고원인	
사고장소			
사고내용	(사고 발생 경위 및 진행사항을 6하 원칙에 맞춰 자세히 작성)		

3. 피해자 / 피해 품목

피해자 성명		피해자 연락처	
피해자 주소			
피해내역 / 품목			

위 기재사항에 대하여 거짓이 없음을 증명하며,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작성일자: 20 . .

작성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

※ 송금 받으실 보험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확인서 제출)
- *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별도 연락을 드립니다.
- * 안내된 서류 이외에도 추가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 * 사고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3. 보험금 지급지연

- *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가지급 보험금 청구절차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서면 혹은 유선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4. 가지급 보험금 제도

- * 보상하는 사고의 손해사정이 늦어지는 경우 청구권자의 요청에 의해 추정지급보험금의 50%내에서 보험금을 (가)지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5.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및 손해사정 비용 부담

-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피해자 ·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하며, 보험계약자 등은 아래의 경우에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③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
- 손해사정 비용의 부담
① 상기 ①의 ①, ②의 경우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② 상기 ①의 ③의 경우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합니다.
- 아래의 경우와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됩니다.
① 보험계약자 등이 본 건 보험금 청구서를 포함한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따른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선임 관련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손해사정 지연시 사고현장 훼손 · 손해 확대 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상기 ①에 따른 선임 관련 안내시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업무를 진행한다는 사실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
-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제187조, 제188조의2, 보험업법감독규정 제9-21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 및 교육을 이수하고 손해배상보증금에 특약을 맺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 관련 법규(보험업법·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등)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나.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 변호사법, 개인정보·신용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법기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처벌 또는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다.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감독규정 제9-16조 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수를 부담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요구하거나 이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라. 해당 손해사정사에 대하여 보험사기 인지 보고가 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마.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보험금에 대한 화해·중재·합의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속한 사실 또는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바. 보험회사가 선임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손해사정사가 선임 동의 기한까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7조제4항에 따른 보수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아. 자동차사고의 경우 발생한 손해를 정비업체,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급보증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업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 ②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 ③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④ 상기 ①~③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의 대행
- ⑤ 상기 ①~③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6. 비례보상 및 중복보험 안내

- * 보험종목 및 특약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은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동일한 내용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둘 이상의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중복보험 처리규정에 따라 보상됩니다.

7.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 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189조) 단, 보험사고로 인해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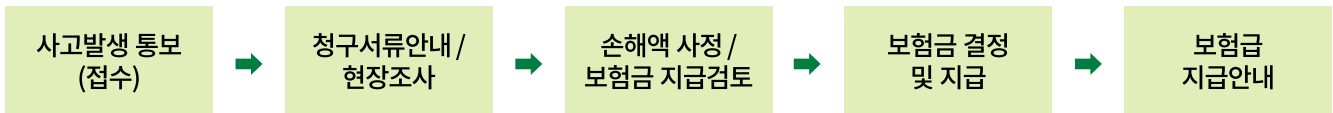
8.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접수시 통보하여 주신 연락처(e-mail 또는 SMS)로 보험금 지급안내문이 발송됩니다.
DB손해보험 홈페이지(www.idbins.com)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과정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재심사 청구

※ DB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DB손해보험 소비자보호파트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접수 : 홈페이지(www.idbins.com, 고객센터)에 접속하여 신청
우 편 접 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 19층 소비자보호파트
전 화 상 담 : 1588-0100

보험금 지급절차 0619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 대표번호 : 1588-0100 / www.idbins.com



※ 사고접수가 완료되면 SMS를 통해 사고접수 및 보상담당자 성명과 연락처가 통보됩니다.
※ 보험금 지급, 보상처리 종결시 SMS 및 제공하신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 보험금 지급내역이 통보됩니다.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고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구상관련 업무, 손해사정 또는 의료자문 포함)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및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금융거래 관련 업무 ○ 자동차과실 비율분쟁 심의업무(자동차보험에 한함)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단,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 및 별도 보관)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①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③채권·채무 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을 말한다.

·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u>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기왕증 등), 보험사고 조사 (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위 <u>민감정보</u>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 성별, 국적, 직업,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 국내거소신고번호, 소득증빙자료, 음성정보, 운전면허정보,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차량등록증상의 정보
신용거래정보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위 <u>개인신용정보</u>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보험요율산출기관 : 보험개발원 ○ 보험회사 등 : 손해보험회사, 국내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 금융거래기관 :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보험협회 : 생명·손해보험협회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 공공기관, 법령상 업무 수행 기관(위탁사업자 포함) ○ 계약관계자 :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자, 보험계약자 등 ○ 업무수탁자 등 : 보험금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 업무를 위탁받은 자 (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의료기관·의사, 변호사, 위탁 콜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분쟁심의회 등)
--------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개인(신용)정보조회,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 교통사고처리내역발급 간소화 서비스 ○ 보험요율산출기관 : 보험요율산출 ○ 보험회사 등 :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 재보험금 청구, 보험사고조사(보험사고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업무, 보험금청구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 진료비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 구상금분쟁심의업무 ○ 금융거래기관 :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보험협회 :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업무지원 ○ 공공기관 등 : 보험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보험에 한함), 도로교통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포함) ○ 계약관계자 : 손해사정 내용 관련 정보 제공 ○ 업무수탁자 등 : 보험금 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 관련 위탁업무 수행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 종료 후 5년까지)

*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지점이 재보험금 청구 등 지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외국소재 본점에 귀하의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u>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기왕증 등), 보험사고 조사 (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위 <u>민감정보</u>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피보험자와 수익자의관계, 국내거소신고번호, 소득증빙자료, 음성정보, 운전면허정보,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차량등록증상의 정보
 신용거래정보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위 <u>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u> 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2-1. 국외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자	○ 국외 재보험사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재보험금 지급·심사, 법률 및 국제협약 등의 의무이행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관련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

• 제공 항목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신용거래정보	성명, 연령, 성별,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등), 보험금정보(사고정보, 지급금액 등)
	위 개인신용정보 <u>제공</u> 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3.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국토교통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 교통사고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 생명·손해보험협회 : 보험금 지급·심사(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등) ○ 보험요율산출기관·국토교통부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 법령에 의한 업무수행 등
조회동의의 효력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 (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함.)

• 조회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 조회</u> 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정보(진료기록, 상병명, 기왕증 등), 교통법규위반 정보, 교통사고조사기록(보험요율산출 기관을 통한조회)
	위 <u>민감정보 조회</u> 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신용거래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피보험자와 수익자의관계, 국내거소신고번호, 소득증빙자료, 음성정보, 운전면허정보,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차량등록증상의 정보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위 개인신용정보 <u>조회</u> 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DB손해보험주식회사

20 년 월 일

본인 : (인)

법정대리인 : (인)

※ 만 14세 미만의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